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0가단656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권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계열

2. C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98/3,74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에 2020.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98/3,74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4. 27. 접수 제18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17/20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2/1,16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20.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200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2/1,16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5. 4. 접수 제19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D은 1999. 1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2명(E, F)이 있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르1162 이혼 등 사건에서 2011. 1. 27.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20르1162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D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 지칭한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0원은 2022. 1. 28.까지, 금 20,000,000원은 2011. 9.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1회라도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충남 당진군 G 답 932㎡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1. 1.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인 사건본인 E과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인 사건본인 E과 F의 양육비로 2011. 2. 1.부터 2019. 12. 13.까지는 월 2,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2. 1. 9.까지는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D은 위 조정성립 후인 2011. 2. 1. 원고와의 이혼신고를 마쳤다. D과 피고 B는 2011. 8. 22.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1명이 있다

3) 한편, D은 2005. 6. 8. 당진시 G1) 답 93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중 372/9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1. 당진시 H 임야 11,70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중 17/200(= 8.5/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가 2020. 2. 21. 제2 토지 중 372/4,660 지분에 관하여 2011. 1.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제2 토지에 관한 D의 지분은 1,488/4,660(= 372/1,165)이 되었다.

4) D은 2020. 4. 27. 피고 B와 제1 토지 중 372/932 지분 및 제2 토지 중 372/1,165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위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5. 4. 접수 제19314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5) 그 후 D과 피고 B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호협161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2021. 4. 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D은 대전지방법원 2020르1162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과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1. 2. 1.부터 2019. 12. 13.까 지 월 2,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2. 1. 9.까지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1. 2. 1.부터 2020. 9. 30.까지의 양육비 총 222,000,000원 중 13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20. 9. 30. 기준으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128,032,787원과 미지급 양육비 86,000,000원 합계 214,032,787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D과 피고 B는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혼을 가장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토지 지분의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증여가 D과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산분할 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D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은 2011. 8. 22. 피고 B와 결혼한 후 사업에 계속 실패함에 따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까지 대신 납부하는 등 전처인 원고와의 관계도 청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D과 피고 B의 가정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D과 피고 B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B는 2020. 1.경 D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3. 19.경 D과 이혼에 합의하였는데, D이 피고 B에게 위자료의 지급 및 재산분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이전하되 편의상 그 등기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하였고, D과 피고 B의 이혼으로 나이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하여 협의이혼절차는 2021. 1. 31.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증여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설령 부부인

두 사람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D과 피고 B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호협161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2021. 4. 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설령 두 사람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증여한 후 약 11개월이 지난 2021. 4. 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만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이전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이전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D과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4. 27. 당시 약 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② D은 피고 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위한 급부 및 재산분할의 의미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증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D과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이전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1) 당시는 충남 당진군 I리였으나 2012.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당진시 J동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칭으로 표시한다.